

(우)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층 8층 [http://www.kma.org] / 전화(02)6350-6531/ 전송(02)796-4487
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6574] 의료정책팀장 손용석[6532] 팀원 손제호[6531]/ E-mail : sjeah@hanmail.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 689-12887 호

시행일자 2021. 1. 18.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1.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는 바, 귀 회에 동 개정법률(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하시어 2021. 1. 25.(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상기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에 대한 의견

나. 제출기한 : 2021. 1. 25.(월)

다. 제출처 :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의료정책팀

(E-mail : sjeah@hanmail.net / fax : 02.796.4487/ ☎ 02.6350.6531)

붙임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에 대한 의견요청 공문 일체. 끝.

대한의사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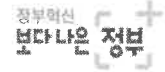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16개 시도지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
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병원의
사협의회장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1.1.27.(수)까지 우리 부(치매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강선우 의원 등 11인 (2020.12.17.)	6668	○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국가에서 시설·인력·장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
김두관 의원 등 10인 (2021.1.7.)	7225	○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

- 붙임 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1부
 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1부
 3. 검토의견(양식) 1부. 끝.

보건복지부



수신자 중앙행정기관, 본부각과장, 소속기관장, 산하공공기관장, 17개 시도, 중앙치매센터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치매학회장, 대한치매학회장, 한국치매가족협회장

주무관 인혜정 행정사무관 이석준 치매정책과장 유보영 전결 2021. 1. 13.

협조자

시행 치매정책과-137 (2021. 1. 13.)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536 팩스번호 044-202-3972 / ahj2327@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68
----------	------

발의연월일 : 2020. 12. 17.

발 의 자 : 강선우·김승원·홍성국
남인순·허종식·이수진
최종윤·한정애·이규민
김민기·김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매우 부족한데다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에는 인력 등 예산지원이 가능하지만, 인력을 갖추지 못해 치매안

심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요양병원의 경우 예산을 지원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시설·인력·장비 등 그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6항 신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4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 ⑥ 국가는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확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생략)</p> <p><신 설></p> <p>⑥ (생략)</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국가는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확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⑧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7항----- ----- ----- -----</p>

5. (생략)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현행과 같음)

⑨ -----제8항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225
----------	------

발의연월일 : 2021. 1. 7.

발 의 자 : 김두관·신정훈·강선우
홍기원·이규민·이수진
이수잔^(비)·강훈식·안민석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를 의미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대만, 일본, 홍콩, 중국 등의 경우에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였음.

이에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95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치매관리법”을 “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치매의”를 “인지저하증의”로,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퇴치”를 “인지저하증퇴치”로, “치매로”를 “인지저하증으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치매”란”을 ““인지저하증(認知低下症)”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로”를 각각 “인지저하증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치매의”를 “인지저하증의”로, “치매환자에”를 “인지저하증환자에”로, “치매에”를 “인지저하증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수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중앙치매센터”를 “중앙인지저하증센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역치매센터”를 “광역인지저하증센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치매안심병원”을 “인지저하증안심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치매관리에”를 “인지저하증관리에”로,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치매를”을 “인지저하증을”로,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와 치매예방”을 “인지저하증과 인지저하증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관리 및 인지저하증환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치매극복”을 “인지저하증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치매를”을 “인지저하증을”로, “치매극복”을 “인지저하증극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극복”을 “인지저하증극복”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인지저하증관리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인지저하증관리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국가인지저하증관리위원회”로,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검진사업”을 “인지저하증검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치매”

를 각각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치매환자가족”을 “인지저하증환자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관리”를 각각 “인지저하증관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국가인지저하증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국가인지저하증관리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국가치매관리”를 “국가인지저하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각각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의”를 “인지저하증의”로,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인지저하증 연구·개발 사업(이하 “인지저하증연구사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치매연구사업”을 각각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치매검진사업)”을 “(인지저하증검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를”을 “인지저하증을”로, “치매검진사업”을 “인지저하증검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검진사업”을 “인지저하증검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검진”을 “인지저하증검진”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환자”를 각각 “인지저하증환자”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환자”를 각각 “인지저하증환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치매의”를 “인지저하증의”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치매정보시스템”을 “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 관련”을 “인지저하증 관련”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치매정보시스템”을 “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치매실태조사”를 “인지저하증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에”를 “인지저하증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치매환자”를 각각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치매정보시스템”을 “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치매와”를 “인지저하증과”로 한다.

1. 인지저하증검진사업

5.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

제16조의 제목 중 “중앙치매센터”를 “중앙인지저하증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중앙치매센터”를 “중앙인지저하증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치매정보시스템”을 “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

고, 같은 항 제11호 중 “치매 인식개선”을 “인지저하증 인식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치매 관련”을 “인지저하증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 중 “치매와”를 각각 “인지저하증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치매센터”를 각각 “중앙인지저하증센터”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광역치매센터”를 “광역인지저하증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광역치매센터”를 “광역인지저하증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치매”를 각각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의”를 “인지저하증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0호 중 “치매”를 각각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광역치매센터”를 각각 “광역인지저하증센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16조의4의 제목 중 “치매안심병원”을 “인지저하증안심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의”를 “인지저하증의”로,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인지저하증안심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치매안심병원”을 “인지저하증안심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인지저하증안심병

원이 인지저하증전문병동”으로, “치매 관련”을 “인지저하증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안심병원”을 “인지저하증안심병원”으로,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치매안심병원”을 “인지저하증안심병원”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예방과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예방과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안심센터”를 각각 “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치매환자”를 각각 “인지저하증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4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치매관리”를 “인지저하증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안심센터에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매예방,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예방, 인지저하증환자”로,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치매환자”를 각각 “인지저하증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치매 관련”을 “인지저하증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매연구사업”을 “인지저하증연구사업”으로, “치매검진사업”을 “인지저하증검진사업”으로, “치매환자의”를 “인지저하증환자의”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중앙인지저하증센터, 광역인지저하증센터 및 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치매관리사업”을 각각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한다.

제19조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치매관리사업”을 “인지저하증관리사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지저하증”이란 「인지저하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지저하증을 말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치매”를 각각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치매관리법”을 “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인지저하증안심센터”로,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한다.

③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인지저하증관리법」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치매관리법」”을 “「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치매환자”를 “인지저하증환자”로 한다.

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다.

제9조제2호 중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치매관리법」”을 “「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치매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치매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생략)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하중으로-----

-----인지저하증

으로-----

3. “인지저하증관리”---인지저하증의-----인지저하증환자에-----인지저하증에-----

4. --인지저하증관리사업수행기관-----

가. -----중앙인지저하증센터

나. -----광역인지저하증센터

다. (현행과 같음)

라. -----인지저하증안심병원

마. -----인지저하증안심센터

바. -----인지저하증관리사업-----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인지저하증관리에-----인지저하증관리사업-----

-----인지저하증-----인지저하증환자-----

② -----인지저하증환자-----

③ -----인지저하증과 인지저하증예방-----

④ -----인지저하증관리사업-----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저하증관리 및 인지저하증환자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

제5조(인지저하증극복의 날) ① 인지저하증관리-----
-----인지저하증을-----

---인지저하증극복-----

② -----인
지저하증극복-----

제2장 인지저하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인지저하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국가인지저하증
관리위원회-----인
지저하증관리-----

②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

-----.

1. 인지저하증-----
2. 인지저하증검진사업-----
3. 인지저하증환자-----
4. 인지저하증-----
5. 인지저하증-----
6. 인지저하증관리-----
7. 인지저하증환자가족-----

8. -----인지저하증관리-----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지저하증관리-----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국가인지저하증관리위원회)

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생략)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 2.·3. (생략)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인지저하증관리-----

-----국가
인지저하증관리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지저하증-----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기능) -----

1. 국가인지저하증관리-----

2.·3. (현행과 같음)

4. 인지저하증관리사업-----

5. -----인지저하증관리사업-----

제3장 인지저하증연구사업 등

제10조(인지저하증연구사업) ① -----인지저하증의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인지저하증 연구·개발 사업(이하 “인지저하증연구사업”이라 한다)-----.

② 인지저하증연구사업-----

1. 인지저하증환자-----

2. 인지저하증-----

3. (현행과 같음)

③ -----인지저하증연구사업-----

④ -----인지저하증연구사업-----

⑤ -----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인지저하증연구
사업-----.

⑥ 인지저하증연구사업-----
-----.

제11조(인지저하증검진사업) ① -

-----인지저하증을
-----인지저
하증검진사업-----
-----.

② 인지저하증검진사업-----
-----.

③ 인지저하증-----
-----.

④ -----인지저하증검진-----

-----.

제12조(인지저하증환자의 의료비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

지원사업) ① -----

-----인지저하증환자-----

-----인지

저하증-----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인지저하증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

-----인지저하증환자-----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인지

저하증환자-----

-----.

1. (현행과 같음)

2. 인지저하증환자-----

우

3.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 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지
저하증환자-----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

① -----인지저하
증의-----

-----인지저하증등록통
계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등록 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관련 사업과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

② -----인지저하 증등록통계사업-----

제13조의2(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인지저하증 관련-----
-----인지저하증안심센터-----
-----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역학조사) ① -----인지저하증-----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인지저하증실태조사의 실시) ① -----인지저하증-----

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

-----인지저하증환자-----

-----인
지저하증에-----

1. 인지저하증검진사업
2. -----인지저하증환

<p>의료비 지원사업</p> <p>3. 제12조의2에 따른 <u>치매환자</u>의 가족지원 사업</p> <p>4. (생략)</p> <p>5. <u>치매등록통계사업</u></p>	<p>자-----</p> <p>3. -----<u>인지저하</u> <u>증환자</u>-----</p> <p>4. (현행과 같음)</p> <p>5. <u>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u></p>
<p>6. 제13조의2에 따른 <u>치매정보</u> <u>시스템</u>의 구축·운영</p> <p>7. (생략)</p> <p>8. 제17조에 따른 <u>치매안심센터</u>의 업무</p> <p>9. 그 밖에 <u>치매</u>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② ~ ④ (생략)</p>	<p>6. -----<u>인지저하</u> <u>증정보시스템</u>-----</p> <p>7. (현행과 같음)</p> <p>8. -----<u>인지저하증안</u> <u>심센터</u>-----</p> <p>9. -----<u>인지저하증과</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u>중앙치매센터</u>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치매관리</u>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u>중앙치매센터</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u>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u>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p> <p>2. <u>치매관리</u> 지침 개발 및 보급</p> <p>3. (생략)</p> <p>4. <u>치매연구사업</u> 지원</p>	<p>제16조(<u>중앙인지저하증센터</u>의 설치) ① -----<u>인지</u> <u>저하증관리</u>----- ----- -----<u>중앙인지저하증센터</u>----- -----</p> <p>1. <u>인지저하증관리사업수행기관</u> ----- -----</p> <p>2. <u>인지저하증관리</u>----- -----</p> <p>3. (현행과 같음)</p> <p>4. <u>인지저하증연구사업</u>-----</p>

5.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6. (생략)

7.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8.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지원

9. (생략)

10.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11.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2.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3.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4.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5. 인지저하증관리사업-----

6. (현행과 같음)

7.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

8. -----인지저하증정보시스템-----

9. (현행과 같음)

10. -----인지저하증안심센터-----

11. 인지저하증 인식개선-----

12. 인지저하증 관련-----

13. 인지저하증과-----

14. -----인지저하증과-----

② -----
-----중앙인지저하증센터-----

③ -----중앙인지저하

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중센터-----

-----.

제16조의2(광역인지저하증센터의 설치)

① -----인지저하증관리-----

-----광역인지저하증센터-----
-----.

1. 인지저하증관리사업-----
2. 인지저하증-----
3. -----인지저하증안심센터-----

4. 인지저하증-----

5. 인지저하증-----

6. 인지저하증환자-----
-----인지저하증의-----

7. 인지저하증-----

8.·9. (생략)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8.·9. (현행과 같음)

10. -----
-----인지저하증-----

② -----
광역인지저하증센터-----

③ -----광역인지저하증센터-----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
인지저하증-----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4(인지저하증안심병원의 지정)

① 인지저하증의 인지저하증안심병원

② 인지저하증안심병원

③ 인지저하증안심병원이 인지저하증전문병동 인지저하증 관련

④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치매안심병원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④ 인지저하증안심병원-----

----인지저하증-----

⑤ 인지저하증안심병원-----

제17조(인지저하증안심센터의 설치) ① -----
----인지저하증예방과 인지저하환자-----
-----인지저하증안심센터-----인지저하증안심센터-----

② 인지저하증안심센터-----

1. 인지저하증-----

2. 인지저하증환자-----
3. 인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

4. 인지저하증-----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 6의3. (생략)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

5. 인지저하증환자-----

6. 인지저하증환자-----

6의2.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인지저하증-----

7. -----

-인지저하증관리-----

③ 인지저하증안심센터-----

-인지저하증안심센터에 인지저하증환자-----

④ 인지저하증안심센터-----

제17조의2(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의 설치) ① -----

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2.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3.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4.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

---인지저하증예방, 인지저하증환자-----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

②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

1. 인지저하증-----

2. 인지저하증환자-----

3. 인지저하증환자-----

4. 인지저하증환자-----

5. -----

-----인지저하증-----

③ -----

-----인지저하증상담전화센터-----

-----인지저하증 관련-----

-----.

④ -----인지저하증상

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상담전화센터-----

--.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
-----인지저하증관리
사업-----

-----.

1. -----인지저하증연구
구사업-----인지
저하증검진사업-----
-----인지저하증환자의-----
-----인
지저하증등록통계사업-----

1의2. -----
-----중앙인지저하증
센터, 광역인지저하증센터 및
인지저하증안심센터-----

1의3. -----인지저
하증상담전화센터-----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
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
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
업에 드는 비용

② (생략)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
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인지저하증관리사업-----

3. 인지저하증관리사업-----

4. 인지저하증관리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

-----인지저하증관리사업-----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지저하증관리사업-----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000의원 대표발의]

※ 담당자 :

부(처·청)

직위(급)

성명

(전화번호)

개정안	검 토 의 견	
	검토안(수정안)	검토사유



문서번호 : KAPPN 21-01-04

일자 : 2020년 1월 22일

수신 :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참조 :

발신 :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이은아

제목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1. 귀 원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금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6668 / 의안번호 7225)에 대한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신경과의사회 의견을 제출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강선우 의원 등 11인 (2020.12.17.)	6668	○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국가에서 시설·인력·장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
김두관 의원 등 10인 (2021.1.7.)	7225	○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

[대한신경과의사회의 의견]

① 의안번호 6668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치매 안심병원은 공공노인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지정을 받을 수 있게 제도 보완이 필요함. 공공노인병원만 시설·인력·장비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함.

② 의안번호 7225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우리나라는 이미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 인식개선과 함께,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와 관리 시스템이, 선진국 보다 더 잘 구축되어 있고 치매라는 병증에 대해 기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치매 라는 병명을 “인지저하증” 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혼돈을 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됨.

인지저하증 이라는 명칭은 경도인지장애 와도 혼돈이 되고, 치매에 관한 제도적인 정책을 수행할 때도 애매한 기준이 되어 정책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므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함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이우

